

비사학술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제 규정」 제36조16(비사학술원)에 의하여 설치된 비사학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1.)

제2조(업무) 비사학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사학술원 장학생의 선발
2. 비사학술원 장학생의 관리
3. 비사학술원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4. 그 밖에 비사학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조(조직 및 업무) ① 비사학술원에 원장, 대학원 지도교수, 학부 지도교수, 직원, 계약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2. 1.)

- ② 원장은 비사학술원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대학원 지도교수와 학부 지도교수는 비사학술원생의 학습지도와 상담을 담당한다.
- ④ 비사학술원의 행정업무는 일반대학원 행정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22. 2. 1.)

제4조(임면) ① 원장은 대학원 부원장이 겸임한다.

- ② 대학원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하며, 학부 지도교수는 비사스칼라 지도교수가 겸임한다.
- ③ (삭제 2022. 2. 1.)

제2장 비사학술원생

제5조(선발) ① 학부 비사학술원생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대학교 학부 6학기(건축학전공 8학기, 약학대학 10학기) 이상 이수자 중 매 학기 초 단과대학 학장의 추천을 받아 비사학술원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또한 우리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대학교 학부 4학기(건축학전공 6학기, 약학대학 8학기) 이상 이수자 중 예비 비사학술원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 1.)

② 대학원 비사학술원생은 우리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비사학술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개정 2020. 9. 1.)

1. 학부 최종학기 비사스칼라 장학 수혜자
2. 학부 최종학기 비사학술원생
3. 단과대학 또는 학과(전공) 수석 졸업자
4. 외국의 주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우리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내국인에 한함)

제6조(특전) ① 비사학술원생은 선발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하되, 「학칙」에 정해진 수업연한(석·박사과정 포함) 이내로 한다.

② 명교생활관 입사 시 기숙사비(일반동에 한함) 전액을 지급하며, 연구비, 학기 교환학생 장학금 등 기타 수혜내역은 따로 정한다.

③ 비사학술원생이 우리 대학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우리 대학교와 복수 또는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해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따로 정한다.

제7조(의무) ① 대학원 비사학술원생은 입학 이후 매년 논문형태로 정리된 연구결과물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지 게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비사학술원생은 3학기까지 운영위원회가 정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유지) 비사학술원생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학부 비사학술원생: 직전 학기에 15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 과목 실격없이 평점평균 4.0 이상(의학과는 4.0 이상 또는 상위 20% 이내) 취득
2. 대학원 비사학술원생: 직전 학기에 6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 과목 실격없이 평점평균 95점 이상 취득 또는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게재
3.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의무 준수

제3장 비사학술원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비사학술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사학술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학생처장, 비사학술원장, 대학원 지도교수, 학부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른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사학술원 운영 계획
2. 비사학술원 관련 규정의 제정과 폐지 및 개정
3. 예산 및 결산
4. 비사학술원생 선발 및 자격상실
5. 그 밖에 비사학술원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4장 기타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부 비사학술원생 선발요건

평균평점	취득학점	외국어 성적(토익기준)	활동실적
과목실격 없이 총평균평점 4.2 이상	학기별 15학점 이상	900점 이상	
과목실격 없이 총평균평점 4.0 이상	학기별 15학점 이상	- 인문사회계열: 800점 이상 -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계열: 700점 이상	- 아래의 실적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K-STAR S 인증 · 학생학술논문 최우수상 수상 · 전국규모학술지 논문(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게재 · 국제공모전 또는 국내공모전 수상 ※ 국외봉사활동 등 봉사실적 우수자를 우대하여 선발함

※ 기타 공인외국어성적은 별표 2를 준용함

[별표 2]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환산표

영 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TOEC	TOEFL (IBT)	TEFS	TOEIC -S	OPIC	JPT	JLPT	CPT	신HSK 급수 (접수)	GER		DELFL	TORFL	FLEX (듣기/ 읽기)	DELE	SELE
									자격증	Note					
900	102	490	170	AL	820	N1 (120)	800	6급 (180)	B2 (DSH Test Daf)	3(B) 4(C)	B1	1	700	B2	550
800	85	387	150	IM	720	N2 (130)	700	5급 (210)	B1	3(B) 4(C)	A2		600	B2	450
700	75	327	140	-	630	N2 (110)	600	4급 (240)	A2	3(B) 4(C)	A2	기본	500	B1	350